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26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성일종 · 강대식 · 백중헌
김미애 · 추경호 · 최수진
박덕흠 · 고동진 · 최보운
송석준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을 “공개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 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u>인터넷 홈페이지 등</u> <u>에 공개할</u>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 적사항 등의 공개) ① ----- ----- ----- ----- <u>공개할</u>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u> <u>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u> <u>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u> <u>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u> <u>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u> <u>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병역의</u> <u>무 미이행 사항 등의 정보를</u> <u>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u> <u>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	⑤ ----- <u>제4항</u> ----- -----

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